옥외집회(시위·행진) 신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접수일자						처리기간 즉		(앞쪽)
신고인	성 명(또는 경	직책)						생년 [.]	월일		
	주 소 (전화번						<u>덕화번호</u>	<u>-</u> :)
집회 (시위 • 행진) 개요	집회(시위·행진) 명칭										
	개최일시	년 월	일 /	\ 	분 ~	년	월	일	시	분	
	개최장소										
	개최목적										
관련자 정보	주최자	성명 또는 단체	ll 명				생년월 직업				
		주소									
	주관자	성명 또는 단체	세명				(전화 생년월)
		주소					직업				
							(전화		:)
	주최단체의	성명					생년월				
		주소					직업				
	대표자	丁 土					(전화	버ㅎ	•)
		성명					생년월				,
	연락						직업				
	책임자	주소									
							(전화	번호	:)
	질서유지인									명	
참가 예정 단체 • 인원	참가예정단	테									
	참가예정인원										
	l										

시위 방법(시위 대형, 구호제창 여부, 그 밖에 시위방법과 관련되는 사항 등) 시위 방법 및 시위 진로(출발지, 경유지, 중간 행사지, 도착지, 차도 보도 교차로의 통행방법 등) 진로 준비물(차량, 확성기, 입간판,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여부와 그 수 등) 참고 사항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> 년 웤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경찰서장(시·도경찰청장) 귀하

첨부서류

- 1.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(주최자,주관자, 참가 예정단체가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- 2. 시위ㆍ행진의 진행방향 등을 표시한 약도(시위와 행진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- 3. 재결서 사본 또는 판결문 사본(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등이나 행정소송을 거쳐 새로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
수수료 없음

유의사항

- 1. 참고사항에는 아래의 사항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.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5항 단서,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용재결 또는 금지통고의 효력 상 실 후 재신고 하는지 여부
- 나. 집회시위의 제한 금지에 대한 행정소송 승소 후 재신고 하는지 여부
- 2. 이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통고를 받게 되므로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- 3. 신고한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